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졸업) 교원양성과정이수 졸업예정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예비신청 안내(안)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사전 점검하고 미충족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교직사정을 시행하오니, 대상학생은 기한내에 예비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비신청대상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6학년도 전기(2027년 2월)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예정인 기수료자 및 교직목적 다전공 이수자 포함)

2. 예비신청 및 제출기한

가. 무시험검정예비신청, 개인별이수현황, 학점인정관련 서류: **2026년 10월 28일(수)까지**

나.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 서류: **2026년 12월 3일(목)까지** ※원본 방문 제출 필수※

※마약류 중독검사 진단서 제출 예정 확인서는 10월 28일(수)까지 제출

3. 제출처: 사범대학교학팀 사무실(A101) 방문 제출 및 담당 이메일(600559@smu.ac.kr) 제출

4. 신청 및 제출사항

구분	내용	비고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예비신청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무시험검정] 신청(신청구분: 예비교직사정) - 교직목적 다전공 이수자는 주전공·다전공 각각 신청·제출 - 이전 학기 신청자도 이번학기 졸업예정이면 신청(졸업유예, 수료자 등)	필수 신청
개인별 이수현황	-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사 → 학생기본 → 교직정보 → 개인별 이수현황] - 개인별 이수현황을 출력하여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충족 여부 및 학점교류·대체인정 관련 사항 확인 - 수강 중 과목은 학수번호·교과목명·학점·취득예정학기 기재, 추가 이수예정 사항 기재 후 학생 본인 확인·서명하여 제출	필수 제출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 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를 받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사범대교학팀 사무실에 방문 제출 - 기 제출자는 확인서류의 유효기간 등 인정 여부를 학과에 확인(유효기간 교원자격 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진, 발급) - TPBE 검사 (검사비용은 학생 개인부담)	필수 검사 및 제출
학점교류,교환학생 학점인정 관련서류	- 학점교류·교환학생 이수내역, 학점 반영 및 대체인정 여부 확인 - 신청서 또는 인정서, 강의계획서, 성적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	해당자

5. 유의사항

가. 예비신청은 교원자격 취득요건 사전 점검을 위한 절차이며, 자격증 발급 여부는 이수·성적 및 제출서류를 확인한 최종 무시험검정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

나. 교원자격증 미취득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교직이수 포기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 확인이 필요하므로 해당자는 학과사무실(02-2287-5123)로 연락 후 진행.

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본교직사정시 무시험검정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교직지원센터에서 일괄 실시함.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세부사항	2009~2012학년도 입학자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2023학년도 입학자	2024학번 이후 입학자
전공 교과 영역	학점	50학점 이상 ※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이며 학부(과)/전공별 졸업기준학점은 별도 확인 필요			
	세부기준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 교육 영역 (필수 이수)	소속 전공별 이수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교과논리및논술 등 3개 교과목 ※ 전공교과 이수로 인정(전공이수 학점에 포함)			
		문헌정보학전공은 제외			
교직 교과 영역	사범계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5학점(8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4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8학점(5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비사범계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4학점(7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4학점(2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2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필수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6학점(3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23학점 이상 [영역] 교직이론 교과목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필수교과목 ▶7학점(4과목) 이상, 교육실습 필수교과목 ▶4학점(3과목) 이상
성적기준		총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전공: 평균성적 75점/100점 이상 교직: 평균성적 80점/100점 이상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재학기간 중 1회 적격 판정	재학기간 중 2회 이상 적격 판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이수 횟수 2회 이상**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여부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을 학과에 제출			
성범죄경력 확인		▶**2021.06.23. 이후**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신청자 및 교원자격증 취득(예정) 대상자: 성범죄경력 일괄 조회 (단,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에게 사전 안내)			
성인지 교육	사범계	성인지교육 의무 없음	성인지교육 2회 이상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성인지교육 4회 이상	
	비사범계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졸업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적용 학번 기준: 입학 연도 기준

※ 기본이수과목/교과교육과목/교직교과목은 우리 대학에서 이수함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타 대학에서 학점교류로 이수 시 반드시 사범대학 또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이수과목 및 교과교육과목은 '전공'으로, 교직교과목은 '교직'으로 이수하여야 함(학점교류 신청 시 강의계획서 첨부)

※ 해외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하는 경우 교직과목은 대체 인정이 불가하며, 기본이수과목은 과목명을 번역했을 때 동일하여야 함(교환학생 학점인정서 제출 시 해당 과목 강의계획서(Syllabus) 첨부)

※ 교육학과의 경우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은 교직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2011~2012학년도 입학자: 교직 14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4학점을 추가 이수)

·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교직 12학점까지 대체 인정(전공과목 50학점 + 12학점을 추가 이수)

※ 기본이수영역 지정교과목 현황 등 세부사항은 반드시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참조